

상지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내규

제정 2024. 05. 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상지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전공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무능력 등 역량을 구비한 전문적인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대상) 본 내규는 상지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하여 재학 중인 모든 학과생에게 적용된다.

제2장 전공 수업 관리

제1조 (출석) 전공과목 출석은 학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① 출석 확인은 매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 ②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해당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F 또는 NP로 처리한다.
- ③ 과목당 결석일수가 2주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 출석을 권고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과목 출석부의 상담일지에 기록한다.

제2조 (공결처리) 전공과목 공결처리는 학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①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공결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5주를 초과할 수 없다.
 1. 경조사의 경우
 - 가.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3일
 - 나. 직계 5촌 이내(백숙부모) 사망 1일
 2.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학과 및 단과대학 체육대회 또는 행사, 대학 입학에 관련한 학과 홍보 활동)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4. 졸업예정자로서 국가공무원 또는 기타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 학생의 입원 또는 진료기간

가. 3일 이내인 경우 : 진료확인서

나. 4일 이상 ~ 4주 미만인 경우 : 병원진단서

다. 기타 질환으로 인해 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우

6.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 학기당 3일 이내 단, 시험 기간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공결 인정에서 제외

7. 천재지변, 재난 또는 법정전염병 감염 등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① 공결 허가를 받은 학생은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결신청서 사본을 공결 사유 발생 전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타(통학 버스 운행 지연 등의 사유)

8. 위와 같은 공결의 경우, 담당 교수 확인 후 대체 수업 혹은 과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4조 (시험) 전공과목 시험은 학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① 시험은 매 학기 전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매 학년도 학기의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은 학사일정에 정한 소정 기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과목별 담당 교수는 필요에 따라 정기시험 외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공에 관한 시험은 정한 기간 중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미응시한 학생의 경우 담당교수 확인 후 학과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성적) 전공과목 성적은 학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① 각 과목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 및 과제물 성적을 종합 평가한다.

② 성적평가 등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과목을 이수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담당교수 확인 후 학과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졸업

제1조 (등록)

① 4년(8학기)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 재입학생, 조기 졸업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졸업취득학점)

- ① 졸업학점은 130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되 교과과정 이수 구분에 따라 각기 소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내용	교양			전공				합계
	필수	중점	선택	기초	필수	선택	계	
졸업 이수학점	4	3	23	12	60	24	84	130

제3조 (전공 졸업요건)

- ① 전공의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② 4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모의고사 시험에서 3회 중 1회 이상 모든 교과목 평균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 ③ 학과 내규 제 5장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학과 봉사활동, 학과 동아리, 대외 학술대회 참여)
-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의 내용을 이수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4장 실습

제1조 (실습기간 및 배정)

- ① 본교 3학년 및 4학년 전공 학생은 배정된 임상 기관에 따라 총 5개월간 의무적으로 임상 실습에 참여한다.
- ② 해당 실습은 작업치료사임상실습1~4 과목 16주, 감각재활현장실습 과목 4주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 ③ 실습기관 배정은 학과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제2조 (실습 조건) 작업치료학임상실습1~4, 감각재활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을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임상실습을 위한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임상실습 점수는 80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③ 실습대상 학생은 전공과목 이수와 함께 학과 내규 제5장 비교과프로그램 규정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 (실습출결관리) 작업치료학임상실습1~4, 감각재활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출결 관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실습출결관리는 해당 기관의 권한으로 위임하며, 각 기관의 규정에 준수한다.
- ② 사전 통지된 사유가 있는 결석의 경우는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하여 출석 인정 여

부를 결정한다.

제5장 비교과프로그램

제1조 (학과 봉사활동)

- ① 본교 전공학생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 ② 1학년 학생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간 8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③ 2학년 학생은 학과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매년 한 개 기관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④ 3학년 학생은 학과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매년 한 개 기관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2조 (학과 동아리)

- ① 본교 전공 1학년, 2학년, 3학생은 매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학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3조 (대외 학술대회)

- ① 본교 전공 2학년, 3학년 학생은 매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대외 학술 대회에 참여한다.

제6장 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1조 (교과목 이수) 졸업 이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졸업 예정자의 경우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조 (비교과프로그램 이수) 학과 내규 제5장 비교과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 하여 재학 중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단, 편입생은 예외사항으로 둔다).